

또한 협성대학에 대한 질책을 감리교 구성원들의 사랑의 채찍질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반수의 가까운 이사를 파송하여 삼일학원의 운영권을 위협하는 것은 민족교회로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가 기도와 눈물로 키워가고 있는 소망의 불씨를 어머니 교단이 강제적으로 끄고,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상동교회의 교육선교와 삼일학원은 감리교 모든 구성원이 지켜내야 할 귀한 역사적 유산입니다. 교단이 개교회가 이룩하여 온 유산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이사를 확보하여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거나, 지분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 사명을 유지하고 유산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단의 감시와 비판, 그리고 협력의 기능은 필요합니다. 현재 5명의 이사 파송과 더불어 감사파송만으로도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원이 겪는 시대적 어려움 가운데, 특정사안과 개교회의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과 연계하여 삼일학원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위해 하는 반복적인 시도는 상동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정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2. 감리교회의 미래의 운명을 책임질 입법의회가 정당한 명분과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체교회의 고유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법이 현행 실정법과 배치되거나 삼일학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감리교의 최후의 지성과 양심의 보루인 총대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현 입법의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대학원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1) 혹자는 감신과 목원은 교단에서 파송한 과반수 이사를 받고 있는데 삼일학원만 5명의 이사를 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삼일학원은 앞부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목원과 감신과 달리 상동교회가 100%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독립학원입니다. 특히 감리회가 5개 신학교에 대한 자산출연을 못해 폐교위기에 있을 때 상동교회가 운영하여 온 삼일학원을 모체로 단독으로 재원을 출연하여 협성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협성대학은 현 수도권 종합대학으로, 중,고등학교는 수원지역 명문사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굳이 조성한 캠퍼스의 유형적 가치를 가늠해 보면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이보다 수 많은 인재와 목회자를 양성하여 기여한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법 제 1조에 따라 삼일학원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할청(문화체육관광부)이 다른 종교법인인 감리회가 장정에 근거하여 독립학교법인을 유지재단에 소속시키거나 특정 이사수의 파송을 강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법하는 것입니다.

2) 삼일 학원은 감리교신학대학과는 달리 종교인만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삼일학원의 본질적 사명은 감리교 목회자만 양성하는 것만이 아닌 상동교회의 역사성대로, 삼일중, 삼일상고, 삼일공고의 3개 학교의 2500명의 중고등 학생과 4000여명이 넘는 일반대학생을 기독교 신앙으로 민족과 사회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은 전체 학생 구성원의 3%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장정에 일반 기독교 중고등학교 운영법인에 이사 파송을 강제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현 사립학교 법은 종교법인이 학교법인에 법에 위배됨이 없이 이사를 파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 14조 제 4항에 의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개방이사에 2분의 1을 추천한다고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파송이사는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불과 4년 전 교단은 삼일학원은 3%도 되지 않은 신학생들이 있다는 명분으로 전체의 33%가 넘는 이사수를 요구하였고, 삼일학원은 현재 교단의 방침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 과반에 가까운 이사를 또 받으라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법인의 리더십입니다. 과반수에 가까운 이사 파송은 상동교회와 교단이 운영권에